

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1. 5. 23 개정 2002. 3. 1

개정 2006. 5. 22 개정 2009. 8. 6

포항공과대학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직원의 복지증진과 포항공과대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다만, 포항가속기연구소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노사협의회는 포항공과대학교직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위원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 의 회 의 구 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인의 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9.8.6일부)

② 근로자위원은 직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단, 협의회 구성 당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8.6일부)

③ 사용자위원은 총장 및 총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자격 및 선출에 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의장 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 의장시에는 윤번제로 회의를 담당케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 개최시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④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보궐위원) 제4조 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협 의 회 의 운 영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에 개최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소집을 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어느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은 협의회에서 비밀로 정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5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심의중인 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업무능력 향상과 성과배분
2. 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삭제: 2009.8.6)
4. 직원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이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직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5.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8.6)
16.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신설: 2009.8.6)
17.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신설: 2009.8.6)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대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6. 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보고사항 등) ① 대학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경제적·재정적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직원의 요구사항을 보고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게시판, 교내신문, 전자메일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직원들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 이행의무) 노사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2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해결할 수 있다.

1.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 충 처 리

제23조(고충처리위원) 협의회에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제25조(고충처리절차) ① 고충처리위원은 직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 고충처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직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2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 접수 및 그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직원회 규약 폐지)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본 대학 직원회 규약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임기의 개시)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이 제정·시행되어 쌍방위원이 선출된 시점부터 개시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6-1-4~6

이 규정은 2006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